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

[엄셋별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44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엄셋별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, 고성미의원

## 1. 제안이유

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.
- 나.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2조).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- 라. 대상 지역(안 제4조).
- 마.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.
- 바.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).
- 사. 주민방역단 지원(안 제7조)

아. 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(안 제8조)

자. 비밀준수의무 및 협력체계, 홍보(안 제9조 ~ 제11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11. 2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 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구제(驅除)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**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감염병 방역 지원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대상 지역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하천변
2.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

3. 빗물펌프장,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취약지역

**제5조(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)**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

**제6조(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
2. 위생해충의 구제 활동
3.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

**제7조(주민방역단 지원)**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활동비 및 부대경비

2.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

3.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**제8조(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)**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

2.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

3.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

4.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구민의 감염병 및 위생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독업소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홍보)** 구청장은 감염병 방역 및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

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감염병예방법)

[시행 2023. 9. 29.] [법률 제19290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>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-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
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

## 신종감염병의 지정

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**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**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, 2021. 3. 9.>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
2의2. 감염병 대비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
3의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
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④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



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51조(소독 의무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, 2023. 6. 13.>

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3. 4.>

③ 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1., 2020. 3. 4.>

## 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3. 9. 22.] [보건복지부령 제965호, 2023. 9. 22., 일부개정]

제36조(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)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2.>